

제목: 혼란스러운 자유권 바로잡기.

작성자: 이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치 “재산권을 보장하는 상태”가 자기 결정의 원리를 가장 잘 보장하는 상태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제약 없이 무언가를 하는 실존적 상태를 ‘자유’라고 이름 붙인 후, 사람들의 거래에 간섭하지 않고 거래 결과를 바꾸지 않아야 자유가 최대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이 순환 논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때 ‘자유’는 도덕화되지 않은 성립하려면,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¹⁾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절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맺은 거래 결과를 가만히 놓아두면 그만큼 간섭이 없는 것이고, 세금을 걷고 무효로 만들고 개입하면 간섭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니 얼핏 보기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승차권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여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운대에 놀러 가려고 한다고 해보자. 표도 없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 그 때, 탑승구에서 직원이 타지 못하도록 저지한다.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체포당하고 감옥에서 콩밥을 먹게 된다. 만일 표를 살 돈이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법이 없다면 그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저지당했다. 이런 상황 역시 간섭이다.²⁾

자유로운 거래 영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자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철도와 지하철을 민영화해서 노선별로, 구간별로 모두 쪼개어 사업자들이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 노선이나 구간을 구입한 회사의 주식을 몇 주 사서 간접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 양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기차 이용 가격이 높아져서, 원래는 자신의 소득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기차를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탈 수 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 기차를 탈 때 직원에게 저지 당할 것이므로 그만큼 자유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지하철처럼 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표를 구입해야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보자. 매번 표를 구입하고 환승절차를 해야 하는 간섭이 그만큼 생겼으므로 자유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식을 사는 일보다는 지하철을 갈아타는 일이 더 자주 있는 일이므로, 민영화되기 이전보다 간섭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스테바³⁾는 소극적 자유에 기대어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소극적 자유 옹호의 이상을 따르더라도,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이념에 이르게 된다고 말이다. 스테바는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사치스러운 일에도 자원을 쓸 여유가 있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의료, 주거, 의복, 음식 등)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논의한다. 이 때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에 의하더라도 부자의 자원을 가지고 가난한 이가 기본적인

1)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 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발적 행위’ 기준을 들면서, 다시 자발적 행위를 ‘절대적 재산권’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하는, 4장에서 지적한 순환논증에 빠진다.

2) Adam Swift, *Political Philosophy: A Beginners Guide for Students And Politicians*, Blackwell, 2007: <정치의 생각>, 김비환 역, 개마고원, 2011, pp.93-94

3) Jan Narveson and James P. Sterba, *Are Liberty and Equality Compatib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art1.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도울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극적 자유”를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로 정의하고 나면, 이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자의 소극적 자유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정치이론에 의하여 도덕화된 정의(definition)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경우 문제되는 소극적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자가 자신의 잉여 자원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빈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다. 다른 하나는, 빈자가 부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취하여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함에 있어 부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다. 그런데 선결 문제요구의 오류(결론이 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끌어다 쓰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소극적 자유만이 자유이고 빈자의 소극적 자유는 자유가 아니니까 부자의 자유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논증되어야 할 결론이지, 전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립화된 소극적 자유 자체만 가지고는 어떠한 갈등 상황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상황에서 스테바은 “당위”는 “가능”을 함의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빈자가 자신의 소극적 자유를 억제하고 자신의 기본적 필요로 포기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중요한 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빈자의 소극적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간취할 수 있는 것은 중립화된 소극적 자유 자체만 비교해서는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양이 많다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자유로 인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익의 중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간섭의 횟수만 놓고 보면, 종교적 자유를 부인하는 A나라와 교통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널 자유를 부인하는 B나라가 있다면, 국교를 믿는 A나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일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때까지 서야 하는 B나라 국민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익의 중대성을 평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중립적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의 양을 논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중립적 의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목적은 여러가지 종류의 소극적 자유의 양을 측정할 수도 없고, 하나의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 자유는 항상 양 당사자 모두에게 걸려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지침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 이론의 다른 가치와 원칙들의 네트워크 속에 중요한 자유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다.

노직은 절대적 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 이외의 것이 분배에 개입하는 것을 ‘정형’(pattern)이라고 부르며, 이런 정형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 자리를 생각해보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위, 연구 성과, 앞으로 얼마나 정력적으로 연구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전망. 이것은 ‘정형화된 기준’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립 대학의 이사장과 자유롭게 거래해서 교수 자리를 잡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인데 이 사실을 그 대학의 이사장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용을 해주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절한 그 사람은 교수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금지는 자발적 거래를 간섭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건을 갖춰 교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교수직을 친구에게 팔거나 자기 가족에게 상속시킬 수도 없다. 이것도 자발적 거래를 간섭하고 정형을 부과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정형 부과가 있다고 해서 자유 침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이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애초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느냐는 노

동 투여의 신비스러운 마술이 아니라, 무엇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권리질서이며 그 질서 내에서 어떤 자격과 기대를 갖게 되었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옹호하려면 정확히 그와 같은 형태와 내용을 갖고 있는 재산권이 왜 도덕적으로 최선인지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보고, 규제 없는 자본주의를 자유에 대한 제약의 부재로 보는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은 큰 결함이 있다. 복지국가가 재산소유자들을 제약한다고 주장할 때는 자유에 대한 도덕화되지 않은 정의에 의존한다. 즉 전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의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존적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곧 자유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재산권에 관한 법도 똑같이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비판에는 재산권을 침해할 권리는 애초에 자유가 아니므로 그런 행동을 막는다 하더라도 자유를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도덕화된 정의로 옮겨간다. “이런 주장은 자유에 대한 정의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유에 대한 정의의 변덕에 의존하고 있다”⁵⁾

결론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자기 소유의 원칙을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이 원칙은 정의의 부인할 수 없는 기초가 된다.

4) Cheyney Ryan, "Yours, Mine and Ours: Property Rights and Individual Liberty", in *Reading Nozick*, Rowman & Littlefield, 1981, pp.323-343.

5)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3 역, 동명사, 2008, p.214